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75134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7513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10. 10 선고 2001나14121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A 담당변호사 윤BA외 17인)

【피고,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기CACA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조BB외 1인)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2001. 10. 10. 선고 2001나14121 판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을 상고인, 부대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부분.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에DA테크를 위하여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602,000,000원의 신용보증을 원고에게 하면서 소외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장을 준공하게 되면 즉시 공장건물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의 시설이 도입되는 즉시 추가담보를 취득하여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담보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을 우선 해지 하도록 특약하였고 원고가 그 특약사항을 위반하면 피고는 그에 상당한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함과 아울러 우선해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담보취득 당시 채권자 내규에 의한 당해 시설이 담보평가액에 담보물건별 융자최고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증해지도록 하였으며, 한편 원고의 시설자금 대출규정상에는 기계를 담보로 한 융자대출 비율을 감정가격의 100% 이내로 한정하되 다만 이EA이 심하여 사후관리가 곤란하고 주담보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기구와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등은 후취 부적격 시설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기계기구는 202,76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음에도 원고는 그 기계기구를 소규모 기계기구로서 유실 훼손될 위험과 장래 환가가치의 희박 등의 이유로 피고의 보증해지에 있어서는 담보가치를 전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기계기구가 이EA이 심하여 사후관리가 곤란하고 주담보 운용이 어렵다거나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라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기계들 중 해당 가격이 10,000,000원 이상, 45,000,000원 되는 것이 상당수 있고 유실훼손의 위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기계기구들의 담보가치를 202,76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범위에서 보증해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보증해지 특약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은 감정가격에 은행의 규정상의 대출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그 범위가 되는 것인 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619 판결 참조),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고가 그 기계기구들의 담보비율과 가격을 위의 감정가격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지 않아서 그 감정가격과 위의 융자비율상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그 사실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부대상고부분.

피고는 부대상고장 제출기한에 해당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 2일을 지나서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니 부대상고는 기각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을 원고,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